

- 해외지역정보 -

베트남, 투자관련 법규 체계 일원화 예정

국별조사실

□ 공통투자법 등 연내 통과키로

- 베트남 정부는 현재 외국인투자법¹⁾, 국내투자촉진법, 기업법, 국영기업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투자와 기업경영에 관련된 제 법규 체계를 연내에 통합하기로 방향을 정함.
- 새로운 체계는 공통투자법(Common Investment Law)과 통합기업법(Unified Enterprise Law)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여 법규 초안 작성을 준비 중에 있음.
- 베트남 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현 규정들이 상호 모순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국내투자가와 외국투자가를 차별하고 있어 외국인의 투자 기피 원인이 된다는 판단에 의한 것임.
- 또한, 베트남-미국간 통상협정 발효와 아세안 자유무역지역(AFTA) 참여 계획, 세계무역기구(WTO) 가맹 교섭 등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요구도 투자 법규 체계 일원화의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보임.

1) 베트남은 외국 자본 및 기술을 적극 유치하고자 1987년 12월 외국인투자법을 공포하였으며, 이 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키 위해 4차에 걸쳐 법을 개정하였음.

□ 내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간 차별 해소가 목적

○ 기존의 주요 4법²⁾은 각각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대해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외국투자기업들은 국내투자기업들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아 왔음.

- 국내투자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당국으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외국인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토지를 일정기간 동안 임차하는 것만 허용됨.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음.

- 국내투자기업은 장기 저리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국내투자촉진법에 따르면 개인도 자유롭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외국 기업과 함께 사업하는 베트남 측 당사자는 반드시 법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개인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 외국투자기업은 지정된 몇몇 분야³⁾에 독자적으로 진출할 수 없고, 반드시 국내기업과의 합작, 사업협력계약 등의 형태로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 MPI⁴⁾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차별적 혜택은 45개에 이룸.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차별과 법규간 상호 불일치, 안정성 결여 등이 외국인 투자 위축과 경제의 대외경쟁력 약화를 가져온다고 보고 법규 체계 정비를 통해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될 전망

○ 새로운 법규가 시행되면 국내투자기업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주어지던 특혜들이 철폐되고, 외국투자기업들이 보다 유리하고 공평한 조건에서

2) 외국인투자법, 국내투자촉진법, 기업법, 국영기업법

3) 공공 통신망 건설 사업, 물류 사업, 우편 사업, 언론 부문, 라디오-텔레비전 등

4) 계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외국 투자자들의 베트남 시장에 대한 접근이 한 층 용이해지고 선택의 폭도 넓어질 전망. 외국 투자자들도 향후에는 합작회사 설립, 간접 투자, M&A 등 여러 선택 가능한 전략 중 하나를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임.⁵⁾
- 투자 유인 혜택을 얻기 위한 절차도 투자자가 당국의 승인을 얻지 않고도 규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간소화될 것임.
- 새로운 규정 하에서 외국투자기업들은 보다 많은 사업적 기회와 선택권을 부여받게 될 것임. 또한 사업에 대한 규제와 금지 규정이 명료해져 법규간 불일치에 의한 불확실성도 상당부분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베트남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투자자들은 베트남의 이러한 조치를 환영하고 있으나 새로운 법률이 정부의 공언대로 공포되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음.

□ 본격적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 걸릴 듯

- 새로운 법은 2005년 중 국회에 제출된 후 심의를 거쳐 2005년 말 통과될 것으로 기대됨. 이 경우 2006년 중반에야 새로운 법이 발효될 수 있음.
- 새로운 법이 발효된다 하여도 외국투자기업들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5) 외국투자기업들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설립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외국투자기업의 베트남 기업 지분 보유 비율을 30%로 제한하는 규정도 상당 부분 완화되어 은행, 통신, 석유/가스 등 자국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부가 지정한 몇몇 분야에서만 30%-50% 사이에서 지분 보유 비율이 제한될 것으로 보임.

사업을 시작하는 데 국내투자기업보다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임. 이는 당국이 국내투자기업들의 정보를 확인하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임. 이러한 불리한 점을 상쇄하기 위해 외국투자기업들에게 다른 유형의 투자유인이 제공될 가능성도 있음.

전문연구원 양동철 (☎6662)